

해외 아동수당 도입사례

김나영·김아름

아동수당의 주요 목적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이미 9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은 재원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 우선순위(정책의지)의 문제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7월 아동수당지원을 목표로 2017년 9월 현재 「아동수당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어 국회처리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해외의 아동수당 도입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아동수당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과세체계와의 연계,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서론

아동수당의 가장 큰 목적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우선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보며, 나아가서는 유자녀 가족이 자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도 본다¹⁾.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은 양육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가구의 출산을 유도함은 물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²⁾. 즉, 아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³⁾. 또한 아동수당 지급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이 없는 가구와의 경제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및 가족정책의 일환인⁴⁾ 동시에 아동의

* 이 글은 육아정책연구소 2017년도 수시과제로 수행한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김나영·김아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1)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2) 최성은·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권리를 신장하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적 정책이기도 하다⁵⁾.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상보육, 양육수당 도입 등 각종 제도를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⁶⁾. 따라서 자녀양육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및 출산을 제고의 측면에서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2006년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⁷⁾.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아동수당 도입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지원의 효율적 시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⁸⁾.

2. 해외 아동수당 현황

가. 개관

아동수당은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아동관련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아동관련 지출 가운데 현금지원은 0.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의 6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⁹⁾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각국의 복지정책의 기초, 사회·경제적 상황 이외 양육지원정책과의 관계 등으로 적용 기준이 상이하나, 대부분의 경우 만 18세가 지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국 가	도입 년도	지급연령	지급내용(월 기준)
독일 (출산율 1.47명)	1954	18세 미만 아동	▶ 자녀수에 따라 차등 - 첫째, 둘째 자녀: 184유로(23만원) - 셋째 자녀: 190유로(24만원) - 넷째 자녀: 215유로(27만원)
일본 (출산율 1.46명)	1972	만15세(중학생) 이하 아동 (1972년 0~12세 선별적 지원 2010년 0~15세 보편적 지원 2012년 0~15세 연령, 아동 수,	▶ 연령, 자녀수, 소득수준별 차등 - 만3세 미만: 1.5만엔(16만원) - 만3세 이상~초등학생 : 1만엔(11만원), 셋째 이상 1.5만엔(16만원)

4) 박경일(1996). 프랑스, 영국 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12(2).

5) 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6)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44호), 2017. 1. 11.

7) 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8) 2017년 9월 현재 「아동수당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한 상황이며,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 경향신문(2017. 7. 20일자 기사), "한국, 아동 관련 공공지출 OECD 바닥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02117025&code=920100(2018. 8. 7. 인출).

국 가	도입 년도	지급연령	지급내용(월 기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중학생 : 1만엔(11만원) - 일정소득 이상(2자녀 4인가구 기준 연 960만엔)은 5천엔(5만원) * 재원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2:1 부담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3세 미만에 대한 아동수당의 7/15(46.6%) 부담
영국 (출산율 1.81명)	1945	16세 미만 아동 (2013년부터 소득별 차등)	▶ 연소득 5만파운드(약 7,148만원)이하 15만원 * 둘째부터 10만원씩 추가 - 연소득 6만파운드 초과(약 8,578만원)시 제외 - 연소득 5~6만파운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프랑스 (출산율 2.01명)	1932	20세 미만 아동 (2015.7월부터 소득별 차등)	▶ 두 자녀부터 지원, 자녀수·소득수준별 차등 - 두 자녀 월 소득 6천유로 이하 129.35유로(16만원) 6천유로 초과시 1/2, 8천유로 초과시 1/4 - 세 자녀 월 소득 6천5백유로 이하 295.05유로(37만원) 6천5백유로 초과시 1/2, 8천5백유로 초과시 1/4 - 네 자녀 월 소득 7천유로 이하 460.77유로(57만원) 7천유로 초과시 1/2, 9천유로 초과시 1/4
오스트리아 (출산율 1.47명)	1948	18세 미만 아동 (학생, 직업교육, 중증장애인일 경우는 24세 미만)	▶ 연령별 차등 - 3세미만: 105.40유로(13만원) - 3~9세: 112.7유로(14만원) - 10~18세: 130.9유로(16만원)
스페인 (출산율 1.32명)	1938	만 18세 미만 양육 및 입양아동	▶ 아동 일인당 24.25유로(3만원)
그리스 (출산율 1.30명)	1958	18세 미만 아동 (전업학생인 경우 22세)	▶ 자녀수에 따라 차등 - 한 자녀: 98.64유로(12만원) - 두 자녀: 295.80유로(37만원) - 세 자녀: 665.64유로(83만원) - 네 자녀: 808.56유로(100만원) - 이후 자녀마다: 135.48유로(17만원) 추가
포르 투갈 (출산율 1.24명)	1942	16세 미만 아동 (학생은 24세)	▶ 소득수준, 연령별 차등 - 가구소득이 최저임금의 50%이하, 만0~3세 140.76유로(18만원) 만3세 이후 35.19유로(4만원) - 가구소득이 최저임금의 51%~100%, 만0~3세 116.74유로(15만원) 만3세 이후 29.19유로(3만원) - 가구소득이 최저임금 101%~150% 만0~3세 92.29유로(12만원) 만3세 이후 26.54유로(3만원)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p.17-18.

이하에서는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그 연령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며, 지급수준도 유럽국가 중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고, 지급수준도 높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에 우선적으로 참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보편적 수당을 시행하다가 최근 소득기준을 제한하는 차등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으며, 급여수준은 독일과 일본의 중간이다. 이상 국가들의 지원대상과 지급수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아동수당 제도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독일의 아동수당(Kindergeld)

독일의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당이다. 지급되는 액수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학업이나 직업교육, 대학진학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5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독일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과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청구권자가 독일 내에 자신의 주소지가 있거나,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통상적·업무적 사유로 인해 체류하고 있어 독일 내에서 납세의무는 없더라도, 독일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의무가 있거나(반드시 독일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연금(퇴직)연령이 된 경우

에는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5호). 예외적으로 아동수당의 청구권자가 외국에서 ‘자원봉사자’, ‘선교사’ 등 자선활동을 하거나 공적 업무에 파견된 공무원인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연방아동수당법 제1조 제1항).

1)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자녀가 출생함과 동시에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직업학교, 대학교육과 같이 아동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최장 25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즉,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18세를 초과한 아동에 대하여 25세의 생일이 종료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¹⁰⁾ 또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도로 아동이 18세를 초과한 후에도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중임이 노동청에 등록된 경우에는 21세까지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2항).

한편, 질병이나 임신으로 인하여 교육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계속하여 지급된다. 다만, 모성보호기간(예컨대, 육아휴직기간)의 경과 후에 아동양육으로 인한 중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가 수령하여야 하며, 부모 중 누가 수령 받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부모가 없는 경우이거나 부모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제3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지만(연방아동수당법 제6b조 제2항), ① 신청자와 일촌관계의 아동, 그 밑으로 입양된 아동,

10) 독일연방 조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2017). Merkblatt Kindergeld, p.8.

② 부부 일방의 아동(이부/이복형제), 신청자가 자신의 가정에 등록한 동반자의 아동과 손자·손녀, ③ 법적 전제요건에 충족된 경우의 양자 등의 경우에는 제3자의 아동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 특히 신청자가 자신의 가족과 유사한, 오랜 기간 형성된 인연으로 연결된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아동을 영리목적으로 자신의 가정에 데리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은 피양육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청구가 인정된다. 이 때, 양자나 피양육아동은 자신의 아동과 같이 가정에 속해 있어야 하며, 보호와 양육관계를 생부모에게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¹¹⁾

2)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수당은 2017년까지 첫째, 둘째 아이는 192유로, 셋째 아이는 198유로, 넷째 아이와 그 이후는 아이 한 명당 223유로를 지급한다. 다만, 2018년에는 이 액수가 일괄 2유로씩 상승한다(소득세법 제66조, 연방아동수당법 제6조). 만약 4명의 자녀가 있다면, $(2 \times 192\text{유로}) + (1 \times 198\text{유로}) + (1 \times 223\text{유로}) = 805\text{유로}$ 를 수령 가능하며, 첫째 아이가 더 이상 아동수당의 수령연령이 아닌 경우에는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부모는 $223\text{유로가 줄어든 액수 } (2 \times 192\text{유로}) + (1 \times 198\text{유로}) = 582\text{유로}$ 를 수령하게 된다.¹²⁾

다. 일본의 아동수당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

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에 시작되었다.¹³⁾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현재의 아동수당법은 2012년 3월에 전면 개정되고, 2016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다.¹⁴⁾ 아동수당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아동수당 지급, 제3장 비용, 제4장 보칙(기타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는 아동수당법의 목적과 아동수당 지급권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중학교 졸업까지(15세 생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감독·보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아동이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내각부, 2017: p.1). 다만,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 국내 주소가 없어지는 전날까지 일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일본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부모가 이혼 등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모가 일본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지정하면, 그 자에게 지급한다. 그 밖에 아동을 양육하는 후견

11) 독일연방 조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2017). Merkblatt Kindergeld, pp.11-12.

12) 독일연방 조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2017). Merkblatt Kindergeld, p.22.

13) 김경석(2012). 일본의 아동수당법 개정.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년 제6호, p.25.

14) 이하에서 설명하는 일본의 아동수당법(児童手当法)에 대해서는 일본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e-gov.go.jp>)에서 인출하였음(2017. 8. 2. 인출).

〈표 4〉 일본 아동수당제도 변화

구분	아동수당법 (2009년 이전)	아이수당법 (2010.4~2011.9)	아이수당 특별조치법 (2011.10~2012.3)	아동수당법 (2012. 3월 이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매월)	1) 0~3세미만 : 10,000엔 2) 3세~초등학교 수료 전 -첫째·둘째 : 5,000엔 -셋째이후 : 10,000엔 3) 중학생 : 지급하지 않음	0세~중학생 : 13,000엔	1) 0~3세미만 : 15,000엔 2) 3세~초등수료 전: - 첫째·둘째 : 10,000엔 - 셋째 이후 : 15,000엔 3) 중학생 : 10,000엔	1) 0~3세미만 : 15,000엔 2) 3세~초등 수료 전: -첫째·둘째 : 10,000엔 -셋째 이후 : 15,000엔 3) 중학생 : 10,000엔 4) 소득제한한도액이 넘는 가정 : 5,000엔
급부총액	1조엔	2.7조엔	2.6조엔	2.3조엔
소득제한	※부양가족 3명 기준 1) 피용자 : 연소득 860만엔 2) 비피용자 : 연소득 780만엔	소득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부양가족 3명 기준 : 연소득 960만엔
자녀의 거주지에 따른 지급여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지급		유학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	자녀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는 자에게 지급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	
보호시설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지급	미지급	안심아이기금으로 지급	시설 설치자 등에게 지급	
기타			1) 보육료를 아동수당에서 징수할 수 있음 2) 아동수당 신청시 동의하는 경우 학교급식비 등을 아동수 당에서 납부 가능	

자료: 김경석(2012). 일본의 아동수당법 개정. pp.33-34. 〈표 2〉 일부 수정·보완.

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후견인이, 아동복지시
설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한자, 수양부모
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양부모 등이 수급
자가 된다.¹⁵⁾

2)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수당은 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일률적
으로 15,000엔을 지급하며,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까지의 아동의 경우 첫째나 둘째인 경우
에는 10,000엔을 지급하며, 셋째 이상인 경우
에는 15,000엔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학생인 경

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0엔을 지급한다. 아동
수당제도상의 아동은 18세가 된 이후 3월 31일
이 되기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므로, 셋째의 경우 18세 이하의 형제자매 중 셋째
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소득한도액 미만
으로 3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연
령이 16세, 14세, 11세이면, 14세인 아동은 중
학생으로 10,000엔, 11세 아동은 초등학교 졸
업 전의 셋째가 되어 15,000엔을 지급 받는다.
만약 아동의 연령이 각각 19세, 14세, 11세인
경우 19세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5) 일본 내각부(2017). 일본 아동수당 제도 안내 리플릿, p.2;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shoushi/jidouteate/pdf/leaf_teate.pdf (2017. 8. 2. 인출).

11세 아동은 초등학교 졸업 전의 둘째가 되어 10,000엔을 지급 받는다.¹⁶⁾

한편, 일본은 소득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법 제5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의 소득이 소득제한한도액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급부로 월 5,000엔만을 지급한다.

라. 영국

영국의 아동수당(Child Benefit) 제도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과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77년 4월에 도입되었다. 2015년 8월 31일자로 약 7백2십만 가구의 1천 2백만 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다. 영국의 아동수당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되기 때문에 첫째 자녀에게 가장 높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수당 및 세금 크레딧(tax credits)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¹⁷⁾

1)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아동의 부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된다. 입양 과정인 경우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동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곧바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국적 역시 아동수당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경우(fostering)에도 지역협의회(the local council)로부터 아

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¹⁸⁾ 그 밖에도 친척 등 지인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역협의회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을 수 있다. 아동 1인당 보호자 1인이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을 잃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보호자 수당(Guardian's Allowance)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¹⁹⁾

아동은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만, 20세 미만의 경우에도 승인된 교육(full-time education)이나 직업훈련(full-time training)을 받고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다. 이 때 해당 아동이 일주일에 24시간 이상 유급근로를 시작하거나 승인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견습생(apprenticeship)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권리에 따른 특정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지급이 정지된다.²⁰⁾ 만약 16세 또는 17세 아동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그만두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서비스 등에 등록하면 아동수당은 20주 동안 지급된다.²¹⁾

한편, 아동수당은 주거지가(main home) 영국(UK)이고, 영국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또한,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만, 아동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옷,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 음식, 용돈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²²⁾

16) 일본 교토부 홈페이지, <http://www.city.kyoto.lg.jp/hagukumi/cmsfiles/contents/0000182/182951/nihongo.pdf>(2017. 8. 1. 인출).

17)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16). A Survey of the UK Benefit System. IFS Briefing Note BN 13, p.20.

18)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2017. 8. 1. 인출).

19)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2017. 8. 1. 인출).

20) 영국 Money Advice Service 홈페이지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articles/claiming-child-benefit>(2017. 8. 1. 인출).

21)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2017. 8. 1. 인출).

22)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2017. 8. 1. 인출).

2) 아동수당 지급액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으로 1년에 약 1,800 파운드를 받게 되는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한 주에 20.70 파운드가 지급되며, 첫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한 주당 13.70 파운드가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가 연 5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별로 차등지급하며, 연 6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독일과 일본, 영국 모두 각각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BKGG), 아동수당법(児童手当法),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이라는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의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중학생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영국은 실업상태에 있거나 학업 중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25세 이하(독일), 20세 미만(영국) 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자녀 차등지급과 같이 별도의 차등기준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자녀 중 셋째이상부터 약 2~3만원 정도 더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에 한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 중 셋째 이상인 경우에 약 5만원을 더 지급한다. 그러나 반대로 영국의 경우에는 둘째자녀부터는 약 4만원 적게 지급한다. 이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하나로 논의되는 반면에 영국은 아동의 최저생계보장, 즉,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빈곤지원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국은 양육자가 5만 파운드 이상의 연소득이 있는 경우 차등 지급하며, 6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에 따른 수당지급 제한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양육자가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5천엔만 지급하며, 독일은 소득세청이 양육자가 아동비과세혜택과 아동수당 수령 중 더 이익이 많은 경우를 평가하여 둘 중 혜택이 더 많은 쪽을 택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은 아동수당 소득제한과 관련하여 일본과 영국에서는 소득제한이 되는 연소득을 양육자들 중 어느 한쪽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처럼 가구소득이 아닌 한명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외별이와 맞별이 간에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3명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외별이 가구소득 기준 연 소득 980만엔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맞별이가 각각 900만엔씩을 벌여 가구 기준 연 소득 1800만엔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독일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와 같은 아동비과세혜택 중 선택하여 보장해주고, 이 경우에도 기본과세표(한부모 등 외별이 기준)와 분할과세표(맞별이 기준)를 따로 마련하고 있어 가구 간 형평성이 맞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급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이나 과세체계와의 연계 등을 논할 실익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아동수당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급연령(18세)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소득차등 시에는 영국과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맞벌이와 외벌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아동이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 시설장에게 지급한다거나(일본) 실제 보호하고 있는 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독일, 영국)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그 밖에도 일본의 경우 법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의 아동수당 비용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자원마련을 위해 우리의 경우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